

의안번호	제호
의결 연월일	년월일 (제회)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반대
결의안

제안자	교육위원회위원장
제안연월일	2024년 4월 24일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반대 결의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2024. 4. 24.

제안자: 교육위원회위원장

□ 주 문

- 국회는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조속한 교권 확립을 통하여 교사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본래의 교육적 취지와 목적에 따라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행정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촉구함.

□ 제안이유

- 국회는 지난 3월 26일 강민정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 대부분이 지나치게 학생의 권리 보호를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는 반면, 의무와 책임은 소홀히 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의무와 책임, 권리가 균형 잡힌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관이 아닌 권리 보장에 치중된 편향적인 인권관을 심어줄 우려가 있음.
- 이는 교권과 학생 인권 간 대립 구도를 조성하여 교사와 학생 간 갈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교권보호 4법* 및 그에 따른 교육부 정책들과 상충됨으로써, 교육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는 법적 조치임.

*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현재의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며, 국회가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조속한 교권 확립을 통해 교사의 교육활동들이 교육 취지와 목적에 따라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를 하고자 함.

□ 보내는 곳 : 대통령실(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교육위원회 위원장, 교육부장관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반대 결의안

국회는 지난 3월 26일 강민정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대부분의 주요내용이 지나치게 학생의 권리 보호에 관한 규정에 편중되어 있고, 학생의 의무와 책임 규정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서 학생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규정은 '학생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되고, 학생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정당한 교육 활동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표현에 불과한 반면,

그 외 대부분의 규정들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사생활 및 의사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징계 및 징계절차에서의 권리'등 학생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이처럼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은 학생들에게 의무와 책임, 권리가 균형 잡힌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관이 아닌 권리에 치중된 인권관을 담고 있다. 이는 교육 현장을 의무와 책임은 없고 권리만 주장하게 만들 수 있어 교육적으로 심히 우려되는 법률인 것이다.

현재 우리 교육의 현실은 무너진 교권이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교권회복을 통한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개정된 관련 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 학교 교육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전념을 다해야 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 이대로 제정된다면, 교육 현장은 또다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있어 교권과 학생 인권 간 대립 구도 조성으로 갈등이 조장될 수 있다.

또한, 교권회복과 보장을 위해 개정된 교권보호 4법*및 그에 따른 교육부 정책들과 상충되어 궁극적으로는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학습 활동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학교 교육환경을 저해하고 공교육 발전을 가로막아 교육 현장을 다시 혼란에 빠뜨리는 역기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는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
둘, 정부는 조속히 교권을 확립하여 교사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교육 취지와 목적에 따라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행정역량을 집중하라

2024. . .

충청북도의회